

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영한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0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4년 11월 14일

발 의 자 : 김영한 의원

찬 성 자 : 성백진, 김태수, 맹진영, 김희걸,
이신혜, 박마루, 이복근, 우창윤,
박성숙, 오승록, 이순자, 박기열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상위법 제명 및 용어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
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“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공공주택건설 등에
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하고 “해촉”을 “위촉해제”로 하며, “감안”을 “고려”
로 하고 “출·퇴근”을 “출근·퇴근”으로 하며 “경과되지”를 “지나지”로 하
고 “신·증축”을 “신축·증축”으로 하며 “부여할”을 “줄”로 하고 “별도의”
를 “따로”로 함. (안 제3조, 제5조, 제7조, 제10조, 제11조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별도의”를 “따로”로 한다.

제5조 제5항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해제”로 하고, 같은조 같은항 제1호 중 “해촉을”을 “위촉해제를”로 한다.

제7조 제3항 중 “경과되지”를 “지나지”로 한다.

제10조 제1항 중 “감안”을 “고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출·퇴근하는”을 “출근·퇴근하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신·증축할”을 “신축·증축할”으로 한다.

제13조 제2항 중 “부여할”을 “줄”로 한다.

제14조 제5호 중 “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<u>별도의</u>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----- ----- ----- <u>따로</u> ----- -----.</p>
<p>5조(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<u>해촉</u> 할 수 있다.</p> <p>1. 본인이 <u>해촉</u>을 원하는 경우</p>	<p>5조(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 <u>위촉해제</u> -----.</p> <p>1. -- <u>위촉해제</u>를 -----</p>
<p>제7조(위원의 의무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<u>경과되지</u>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	<p>제7조(위원의 의무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나지</u>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)</p> <p>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<u>감안</u>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)</p> <p>① ----- ----- <u>고려</u>하여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③ 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·퇴근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하여 역세권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"역세권"이란 「철도건설법」,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라 건설·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.

제11조(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)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·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제13조(민·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,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 확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~ 4. (생략)

5.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의 부대·복리시설에 관한 사항

③ ----- 출근·

퇴근하는 -----

-----.

제11조(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) -----
신축·증축할 -----

-----.

제13조(민·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줄 -----
-----.

제1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 확보) -----

-----.

1.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-----
